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준수사항 안내서

본 안내서 내용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 조건이므로 **미이행 시 중도해지** 됩니다.

사업 중도에 탈락(해지)되지 않도록

아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차례 】

I. 기수별 주요내용 비교 [1](#)

II. 참여자 준수사항 [2](#)

- 1. 근로 [3](#)
- 2. 거주 [4](#)
- 3. 저축 [5](#)
- 4. 교육 [7](#)

III. 약정의 해지 [10](#)

IV. 자주하는 질문 [13](#)

V. 참고 [19](#)

※ 쪽 번호 클릭 시 해당 쪽으로 이동 및
Ctrl (+) F 동시 타이핑으로 원하는 내용 찾기 가능

I 기수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선정월 (첫 저축월)	종료월 (마지막 저축월)	연장 가능 여부 ¹⁾	제외대상*	
				전 기수 공통	기수별 상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²⁾)
27기	16년 12월	19년 11월	가능	- 유사사업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³⁾ - 불법향락업체·도박· 사행업 종사자 - 병역의무이행자 ⁴⁾ - 근로장학생	(가입자) ⁵⁾
37기	17년 6월	20년 5월			가입자
47기	17년 11월	20년 10월			
57기	18년 6월	21년 5월			
67기	18년 12월	21년 11월	불가		가입자 및 중도해지자
77기	19년 8월	22년 7월			

*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재단이 사업 종료 시에 확인한 경우라도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지신청(10쪽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기수 확인방법 >

1.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2. 메뉴이동(마이페이지 - 청년통장 정보)
3. 선정 연도 및 상·하반기 확인



- 1) 종료 시기 시 근로·저축·거주 3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27개월~35개월 매칭 참여자의 경우에 한하며,
27개월 미만의 참여자의 경우 중도해지 대상임.
- 2)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말함.
- 3) 유사사업이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타 지자체단체 자산형성사업”을 말함. 해당 사업에 가입한 수혜자 뿐
아니라 단순 대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일 경우에도 제외되며, 참여자 본인이 아닌 타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제외대상임.
- 4)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www.mma.go.kr/contents.do?mc=usr0000041)에서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복무로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 경찰·소방관, 해양경찰), 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말함.
- 5)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중 '18년부터 추진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도
두 사업 모두 참여는 불가하므로 두 사업 중 한 사업은 해지해야 함. 해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시 중복수혜자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일자가 늦은 사업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II 참여자 준수사항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따라서 근로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달은 저축 시에도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 3년 간 36개월 저축 + 30개월 근로 증빙 =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개월분 + 경기도 지원금 30개월 분 지급

- ‘근로, 저축, 거주, 교육’ 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각 조건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만기 기준	중도해지	비고
근로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납입중지) 가능 -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12 ~ 17시간)
거주	36개월	36개월 미만	- 경기도 거주(36개월) ※ 타 시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 시 거주로 인정
교육	총 3회	3회 미만	- 총 3회 이수(36개월)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저축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 만기지급금 이자는 약정기간 내에는 약정서에 명시된 고정이율을 적용하나, 중도해지 등 36개월 이전 수령 시 별도 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경기복지재단 알림

- 해지사유(병역의무 이행, 전출 등) 또는 정보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서류등록 또는 정보변경 이후 경기복지재단에 유선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직 등 근무지 변경, 월 급여 변동 등은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1 근로

□ 의무사항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매월 반드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 질병 등으로 근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36개월 중 최대 9개월의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근로 및 저축 의무는 정지되며 경기도 지원금 또한 매칭되지 않습니다.

< 유예신청 방법 >

1.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사업 신청 시 가입한 전자우편 계정 및 비밀번호 계속 사용! 새로운 아이디 생성 및 신청 시 연동한 SNS가 아닌 다른 SNS 계정으로 로그인 시 정보 확인 불가!
2. 메뉴이동(마이페이지 - 신청 및 서류 등록 - 유예신청 등록)

3. 신청서 양식

- 1) 다운로드 2) 작성(자필, 타이핑 모두 가능) 3) 서명 또는 날인(자필, 전자 모두 가능)
- * 전자서명은 가능하나 **단순히 본인 이름을 타이핑한 것은 불가**

4. 작성한 유예신청서를 PDF 혹은 이미지(.jpg 및 .png) 파일로 저장

5. “파일추가” 클릭 후 유예신청서 등록

※ 유예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예. 1월 중 저축이 불가할 경우 1월 20일 전 신청, 2월에 사후 신청불가) 취소를 희망할 경우 복지재단과 유선상담 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근로기간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 ~ 27개월 미만	미지급
유예신청	27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만기지급	36개월	

□ 증빙서류

- “사회보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자인) 자영업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하지 않는 경우) <u>고용임금확인서</u>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담당 연락처 필수
자영업자	<u>사업자등록증 사본</u> 및 <u>월별 소득금액증명원</u>	

2 거주

□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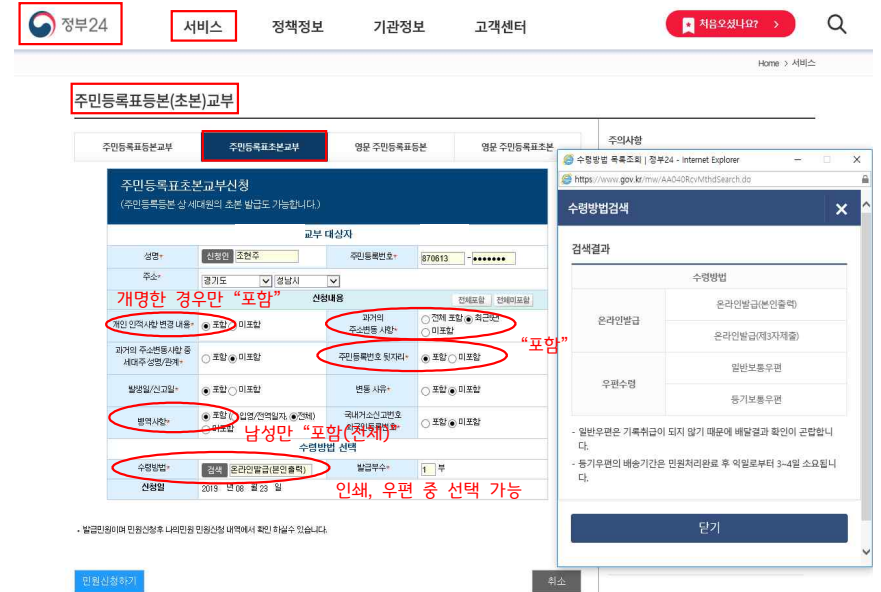
-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 하셔야 합니다.
 -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전출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로 인정됩니다.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 ~ 24개월 미만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만기지급	36개월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공통)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또는 최근 5년간 포함, 주민번호 포함 (남성) “병역사항” 포함



3 저축

□ 의무사항

- 본인 저축액 납입을 확인, 경기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개월 간 반드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등으로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잔액 부족 등으로 20일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어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저축기간(횟수)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 ~ 27개월 미만	미지급
만기지급	27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36개월	

□ 일자별 비교

○ 본인 저축액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저축으로 인정됩니다.

입금일자	내용	경기도지원금	비고
매월	1~20일	정상입금	다음 월 10일 지연일만큼 만기지급일 또한 연기(누적)
	21~말일	지연입금	
	다음달 1~말일	미입금	미지급

※ 불가피한 사유(잔액 부족 등)로 미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저축내역 등 확인 방법 >

○ 저축계좌 확인: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통장 정보

마이페이지

내역정보	청년통장 정보	계좌조회내역	신청 및 서류등록								
<table border="1"> <tr> <td>운영명</td> <td>나눔협업은행</td> <td rowspan="4">매달 20일, 참여자 개인통장에서 이 계좌로 10만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td> </tr> <tr> <td>지점명</td> <td>도청출장소</td> </tr> <tr> <td>계좌번호</td> <td>304</td> </tr> <tr> <td>문번호</td> <td>0313679360</td> </tr> </table>	운영명	나눔협업은행	매달 20일, 참여자 개인통장에서 이 계좌로 10만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지점명	도청출장소	계좌번호	304	문번호	0313679360		
운영명	나눔협업은행	매달 20일, 참여자 개인통장에서 이 계좌로 10만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지점명	도청출장소										
계좌번호	304										
문번호	0313679360										

○ 저축내역 및 지원금 매칭내역 확인: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조회 내역

- 저축내역은 저축일 1일 경과 후 확인 가능(자동이체일인 20일이 토요일일 경우, 22일 저축·23일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매칭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지원되며 15일 이후 확인 가능

마이페이지

내역정보	청년통장 정보	계좌조회내역	신청 및 서류등록		
개인통장 조회내역					
회차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잔액	비고
13	2019-06-20 04:18:55	100,000원	홍길동	1,300,000원	입금
12	2019-05-20 04:24:23	100,000원	홍길동	1,200,000원	입금
11	2019-04-22 04:27:14	100,000원	홍길동	1,100,000원	입금
10	2019-03-20 04:18:32	100,000원	홍길동	1,000,000원	입금
9	2019-02-20 04:17:14	100,000원	홍길동	900,000원	입금
매칭내역 조회내역					
회차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잔액	비고
12	2019-05-31 10:14:04	172,000원	경기복지재단	2,064,000원	입금
11	2019-04-30 10:11:04	172,000원	경기복지재단	1,892,000원	입금
10	2019-03-28 15:06:00	172,000원	경기복지재단	1,720,000원	입금
9	2019-02-28 15:09:18	172,000원	경기복지재단	1,548,000원	입금
8	2019-01-30 15:06:19	172,000원	경기복지재단	1,376,000원	입금

□ 미납

○ 해당 월 내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또는 누적되어 참여기간 동안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9회 초과**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장기 또는 연속미납이 우려될 경우,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미저축 횟수가 **연속 3회 초과**할 경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축여부	x	o	o	x	x	x	o	x	x	x	x	o
미납횟수	1			2	3	4		5	6	7	8	
				연속 3회 = 이상 無				연속 3회 초과 = 해지				

- 미저축 횟수가 **총 9회 초과**할 경우

구분	'17. 01.	'17. 02.	'17. 03.	...	'18. 05.	'18. 06.	'18. 07.	'18. 08.	'18. 09.	...	'19. 10.	'19. 11.	'19.12.
저축여부	x	x	x	o	x	x	o	x	x	o	x	x	x
미납횟수	1	2	3		4	5		6	7		8	9	10
													9회 초과 = 해지

□ 과납

※ 2기(2016.12. 사업참여자)만 해당, 기타 기수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저축이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한 달에 10만원을 초과하여 저축하였을 경우,

- 과납 이후에 발생한 미 저축액은 소급 인정되나,

- 과납 이전에 발생한 미 저축액은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입금액(만원)	10	0	20	10	0	10
저축 인정여부	인정	불인정 3월 과납분 소급 불가	인정	인정	인정 3월 과납분 소급 가능	인정

4 교육

□ 의무사항

○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36개월 간 **총 3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를 아래와 같이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횡수별 비교

처리구분	이수 횡수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 ~ 2회 이하	미지급
만기지급	3회 이상	(근로·저축·거주) 동시 총족 기간만큼 지원

□ 교육 종류

구분	교육과정	시기
온라인	- GSEEK: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심리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위한 재무교육(필수)	연중
오프라인	-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 내용 상이	상시 * 교육 진행 시 문자로 안내

< 교육이수 증빙방법 >

○ 오프라인 교육 이수 시

- 교육 참여 시 서명 등 참석자 확인 시행 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등록하므로, 참여자의 별도 증빙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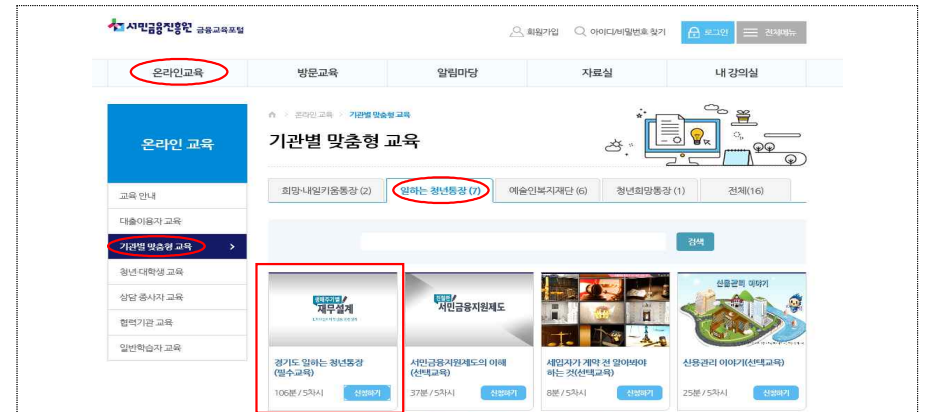
○ 온라인 교육 이수 시

1. 교육 진행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 GSEEK: www.gseek.kr 접속 후 “분야별 학습 - 생활정보 - 재테크” 이동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ra.or.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일하는 청년통장”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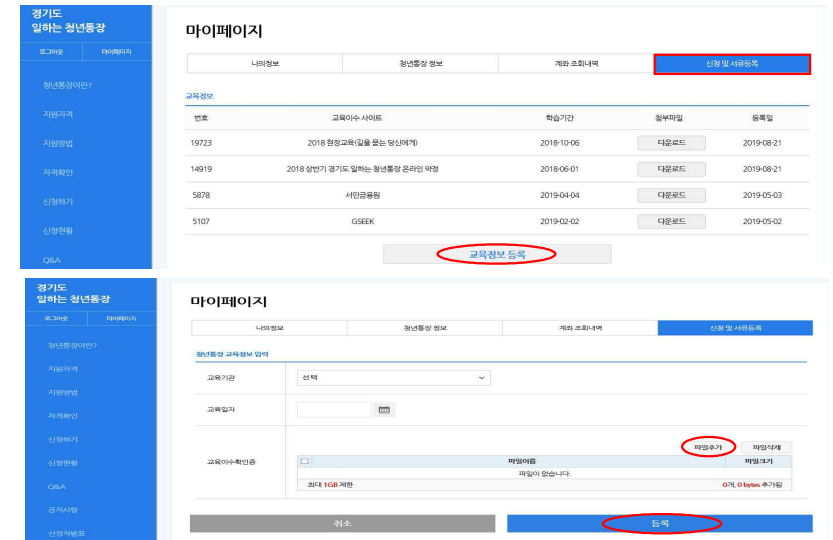
2.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수수료증 다운로드 및 저장

-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 등
- 기관명, 직인 등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



3.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4. 메뉴이동(마이페이지 - 신청 및 서류 등록 - 교육정보 등록)



5. “파일추가” 클릭 후 이수증 등록

III 약정의 해지

□ 구분

- “II. 참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해지됩니다.
 - 참여자 미고지 등으로 재단이 **해지사유를 참여기간 만료 후 확인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로 보고 만기지급액 전액이 아닌 해당 지급액만큼만 지급합니다.
 - 지급에는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를 제외한 **중도해지자는 향후 타 기수 선정 등 사업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유형	해지사유	지급액
일반 중도 해지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4개월 미만) -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미만, 사업 재신청 가능) -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9회 초과 저축하지 않는 경우 (※ 단, 사전에 ‘유예신청’을 통하여 저축 일시중지를 승인받은 경우 제외) - 주요 정보 누락 등으로 참여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총 3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근로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총 27개월 이상의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의무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 및 해당 이자
특별 중도 해지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4개월 이상) -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이상)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저축금 및 경기도지원금, 해당 이자

□ 신청

- 재단 유선 상담을 통하여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알린 후,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인 저축통장 및 경기도 지원금 매칭 실물통장을 수령하신 27기 (2016.12. 참여자)는 **해당 실물통장을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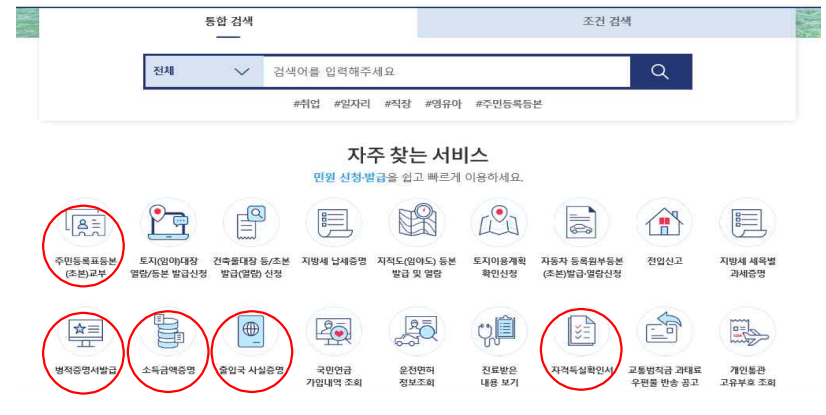
유형	필요서류
일반 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특별 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근로증빙 서류 + 사유별 서류 - (24개월 이후 전출 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2개월 이후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 (참여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

< 특별중도해지 신청 방법 >

1. 경기복지재단 유선상담(031-267-9360)
2.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3. 메뉴이동(마이페이지 - 신청 및 서류 등록 - 중도해지 등록)
4. 신청서 양식
 - 1) 다운로드 2) 작성(자필, 타이핑 모두 가능) 3) 서명 또는 날인(자필, 전자 모두 가능)
 - * 전자서명은 가능하나 **단순히 본인 이름을 타이핑한 것은 불가**
5. 작성한 **해지신청서**를 **해지신청서**
6. “파일추가” 클릭 후 신청서 및 해지종류에 따른 기타 서류 등록

※ 각종 서식은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신청 및 서류등록에서, 증빙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정부24(www.gov.kr)-서비스-신청·조회·발급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인쇄가 불가한 경우는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시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대신 발급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구분	서류	사이트명	제출시기	비고
서식	유예신청서, 해지신청서		신청 시	
증빙	지역 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연락처가 포함된 회사 자체 양식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 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중 택 1	정부 24(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여 중 재단 요청 시 및 참여 종료 후 적립금 신청 시 ⁶⁾ ,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중 택 1		
	거주	주민등록초본	정부 24(www.gov.kr)	전출을 사유로 한 특별중도해지 처리 시, 참여 종료 후 적립금 신청 시
교육	교육이수증	본인 교육이수 사이트 (GSEEK www.gseek.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교육 이수 즉시	재단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저축	별도 증빙 불필요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에서 본인 저축액 및 경기도 지원금 내역 확인 가능

6) 사업 참여 도중 재단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의 근로증빙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36개월 간의 근로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IV

자주하는 질문

1) 참여자 저축계좌와 경기도지원금 계좌가 경기복지재단명의로 개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여자의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매월 참여자의 저축여부를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의 매칭 절차가 필요하여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하되, 참여자 이름이 함께 부기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 홍길동)

2) 저축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경기도지원금은 언제 지원되나요?

▶ 청년통장 사업은 참여자 본인이 사업에 참여한 후 총 36개월 동안 저축하게 됩니다. 참여자 저축일은 매월 20일이며, 다음 달 10일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 됩니다. 첫 저축은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2~36회차 저축은 자동이체를 설정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매월 저축한 참여자에 한하여 근로를 했다는 가정 하에 지원 됩니다. 그러므로 저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 하여 지원된 경우라도 향후 해당 월의 근로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내역은 취소됩니다.

3) 참여자 본인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설정 또는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참여자 본인의 NH농협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설정 또는 변경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뱅킹 시 설정 오류로 인한 저축액 미입금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위 같은 방법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해야 될 경우, 방문하려는 은행에 사전 연락하여 대리인 방문 가능여부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저축일(20일)에 돈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저축일(20일)에 저축하지 못할 경우 21일부터 해당 월 말일 까지 추가저축 가능하나, 자동이체일 기준 저축 지연일수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5) 10만 원 중 일부만 또는 다음 달 저축액까지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 가능합니다.

참여자가 자동이체를 설정한 통장에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 있을 경우, 자동이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저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도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 통장에 10만 원 이상 입금하여도 참여자 저축계좌로의 자동이체는 월 10만 원씩만 진행됩니다. 물론, 자동이체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저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도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저축액을 월 1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은 2기의 경우, 월 10만원 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월 10만원만 인정되며, 한 달에 10만원을 초과하여 저축하였을 경우, 과납 이후에 발생한 미저축액은 소급 인정되나 과납 이전에 발생한 미저축액은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7쪽 참조)

6) 저축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저축일(2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출금됩니다.

7)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 참여를 유지하며 본인 저축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본인 희망 시 중도해지 및 이에 따른 저축액 전액 반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앞서 유선상담이 진행되며,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 후 지급까지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경우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8) 근로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복지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사업 완료 시 서류 제출로 근로증빙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 (피고용인이 아닌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월별 소득금액증명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해당 서류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서류를 내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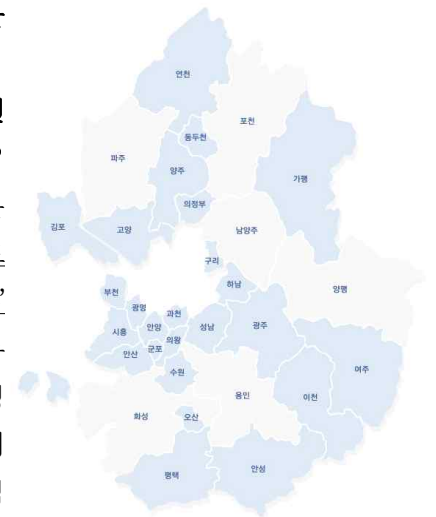
지역가입자가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근로기간, 서명·날인 포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복지재단 담당자가 근로사실 확인을 위해 근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주소만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거주의 기준은 ‘주민등록’입니다. 실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타 시·도일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출 시점이 사업 참여 후 24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되며, 24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월만큼의 경기도 지원금 일부 또한 지급됩니다. 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28개 시·3개 군, 총 31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경기도 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경기도 내 이사(예. 수원시→ 성남시)는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10)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의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11) 병역의무 이행을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소방관, 의무경찰, 해양경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일반 또는 특별 중도해지로 구분됩니다.

- (사업 참여 후 **12개월 이전**(미만) 이행 시) 일반중도해지로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 지급, 경기도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재신청 가능
 - (사업 참여 후 **12개월 이후**(이상) 이행 시) 특별중도해지로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 및 경기도지원금(이자 포함) 지급, 경기도지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향후 사업재신청 불가능

병역의무 이행 중이었으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복지재단에 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사업 종료 후 만기적립금 지급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도 약정은 해지되어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개인정보(거주지, 연락처 등)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참여자가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account.jobaba.net)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에서 변경 후, 이 사실을 경기복지재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변경 및 고지를 하지 않아 경기복지재단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필수교육안내 등)를 받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수하나요?

-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진행 하고 있으며, 교육진행 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4) 사업 참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 참여 중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 ▶ 실업급여 수급은 본 사업의 유예 신청 후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실직 상태인 ‘미근로’ 기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직 등 (일시적) 실업으로 유예신청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지원금은 사업 참여 중에도 동시에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사업 간 근로로 인정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월 12시간 이상을,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15시간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2시간 ~14시간 근로하는 참여자의 경우,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중복 수급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단발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과 동일하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가입자 및 대상자, 고용노동부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사업(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자 및 수혜자 등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수별로 표현,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육아 및 출산 휴가 기간에 유예신청을 하나요?

- ▶ 휴가 기간도 회사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참여 유지 가능합니다. 사유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휴직은 ‘실직’이 아닌 근로로 인정됩니다. 단, 이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유예신청을, 9개월 이상 재취업이 계획이 없거나 불가할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6) 사업 참여 중 자동이체 통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변경 가능합니다. 직접 해당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뱅킹으로 기존 통장의 자동이체 해지 후 변경을 원하는 통장으로 새로이 자동이체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설정 또는 변경 등 금융 관련 업무는 복지재단에서 수행 불가하며, 참여자 본인이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17) 선정 당시보다 급여가 올랐는데 재단에 알려야 하나요?

이직했는데 재단에 알려야 하나요?

- ▶ 본 사업은 ‘근로’가 중요하며, 근로지나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선정 당시 기준입니다. 급여 인상 등에 따라 가구소득이 변하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재단에 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향후 원활한 근로증빙을 위하여 이직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증빙 자료를 미리 발부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재단에 알림 의무가 있는 사항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들, 휴대전화 등 연락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8) 당분간 저축이나 근로가 불가합니다.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병, 이직 등 근로 및 저축이 불가할 경우 유예신청 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저축액을 미납하였을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그러나 유예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미납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근로가 불가할 경우도 유예신청을 하여 저축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6기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 참여가 가능하나 7기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의무	최저요건	유예신청	비고
저축	27회 이상 (연속 3회, 총 9회까지 미납 가능)	유예신청 가능, 유예기간 중 미납횟수는 산정하지 않음	9개월 유예 시 27개월 간 저축·근로 등 사업 참여, 경기도지원금 27개월 분 매칭
근로	27개월 이상	유예신청 가능, 저축의무 면제	
거주	36개월 (전출 후 30일 이내 재전입 가능)	유예신청 요건 아님, 전출(및 30일 이내 재전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지	

19) 연장 참여란 무엇인가요?

▶ 사업 종료 시 증빙서류 확인을 통하여 저축, 근로, 거주가 동시 충족된 기간 만큼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시 **저축 36개월, 근로 30개월의 경우 동시 충족한 30개월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개월 만큼의 경기도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지급”, 6개월 간 추가 참여할 수 있는 “연장” 중 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참여의 경우 36회 모두 완납한 저축은 소급적용 되므로 **추가로 저축할 필요는 없으나, 6개월 간 추가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며 근로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종료 시 **저축 30개월, 근로 36개월의 경우도 30개월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인 6개월 간 저축 및 근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로는 저축과 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거주 또한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후 취소, 철회 등은 불가하므로 연장 참여 중 전출, 미근로와 같은 해지사유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연장 신청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V

참고

1. 유예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중지요청기간: ____년 ____월부터 ____년 ____월까지(____개월)

상기 본인은 _____ 사유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__개월간 적립중지(유예)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락처: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 성 명: 나청년
- 생년월일: 1999.09.09.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로 9999
- 전화번호: 010-1234-5678
- 중지요청기간: 2019년 0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5개월)

상기 본인은 근로유지 불가(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 준비)사유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5개월간 적립중지(유예)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08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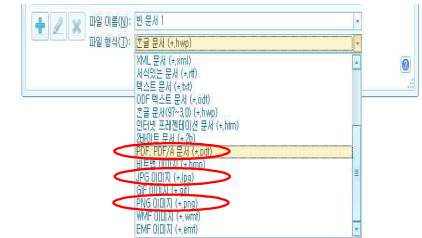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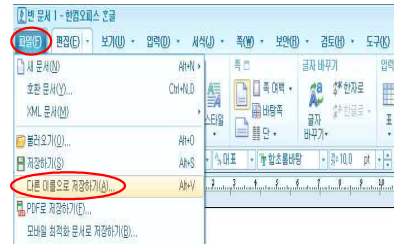
신청인: 나청년 *나청년*
 연락처: 010-1234-5678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2. PDF 및 이미지 파일 저장 방법

- (1안) 인쇄 후 자필 작성·서명 후 스캔 시 pdf로 자동 저장
- (2안) 한컴오피스 한글 활용, 타이핑 및 전자서명 후
 (2-1안)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2-2안) “print screen” 키로 캡처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 (3안) 인쇄 후 자필 작성·서명 후 휴대폰 사진 촬영,
 본인 전자우편·PC카톡 등으로 송부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및 조회조건 “전체” 또는 “직장가입자” 선택

> 자격득실확인서발급내역



2018. 11. 2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이 확인서의 허위·상실은 실제의 사업장 인사팀·피직일과 대응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및 예시

-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회사 자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양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직인(담당자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용주, 발급자 연락처 필수

고 용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시간	월 12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주요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급제	월평균 고용일수 : 일		
		구분	기본(A)	변경(B)	증액(B-A)
		월 급여			
		통상임금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시 유의사항 >

1.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6. 해지신청서 서식 및 예시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 성 명: _____
- 생년월일: _____
- 주 소: _____
- 총 적립 횟수: 총 _____ 회
- 총 지급신청액: 총 _____ 만원
(본인적립금: _____ 만원, 경기도지원금: _____ 만원)
※ 중도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경기도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
- 적립금 반환계좌: _____
※ 반드시 참가자 본인명의 통장 제출
- 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일반중도해지 중 택 1, 이후 괄호 안 세부사유 택 1
 특별중도해지
((24개월 이후) 타 시·도 전출 (12개월 이후) 병역의무 이행 사망)
 일 반 해 지
((24개월 미만) 타 시·도 전출 (12개월 이전) 병역의무 이행 단순변심
 유사사업 참여 장기 해외출국 근로 유지불가 경제적 문제
 미납횟수 초과(연속 3회 총 9회))

상기 본인은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대리인): _____ (인)

연락처: _____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 성 명: 나청년
- 생년월일: 1999.09.09.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00구 0000로 9999
- 총 적립 횟수: 총 25 회
- 총 지급신청액: 총 600 만원
(본인적립금: 250 만원, 경기도지원금: 600 만원)
※ 중도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경기도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
- 적립금 반환계좌: 농협 987-6543-210 (예금주 나청년)
※ 반드시 참가자 본인명의 통장 제출
- 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일반중도해지 중 택 1, 이후 괄호 안 세부사유 택 1
 특별중도해지
((24개월 이후) 타 시·도 전출 (12개월 이후) 병역의무 이행 사망)
 일 반 해 지
((24개월 미만) 타 시·도 전출 (12개월 이전) 병역의무 이행 단순변심
 유사사업 참여 장기 해외출국 근로 유지불가 경제적 문제
 미납횟수 초과(연속 3회 총 9회))

상기 본인은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 년 08 월 01 일

신청인(대리인): 나청년 *나청년*

연락처: 010-1234-5678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